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264
----------	-------

발의연월일 : 2026. 1. 22.

발 의 자 : 김정호 · 박 정 · 윤후덕
이연희 · 김남희 · 서왕진
허종식 · 이수진 · 전진숙
박해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포장재, 가구·가전제품 등 일정한 품목에 대하여 재질·구조 기준 설정, 재활용의무 부과, 폐기물부담금 부과를 통해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있음.

그러나 개별 법률에 따라 관리·분류되는 제품 중에서도 멀티슈와 같이 합성수지 또는 합성섬유를 포함한 일회성 제품의 경우 재활용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질·구조 개선이나 비용 부담에 관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 사용 또는 폐기 과정에서 하수도 막힘, 수생태계 오염 등 환경 전반에 구조적인 부담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그 사용 또는 폐기로 인하여 재활용이 곤란하거나 환경에 중대한 부담을 유발하는 제품을 ‘환경 위해 우려 제품’으로 지정하고, 해당 제품에 대하여 재질·구조 개선 기준의 설정, 환경 위해 방지를 위

한 표시 사항의 정비, 폐기물부담금의 부과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활용의무를 직접 부과하지 아니하면서도 제품으로 인한 환경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신설, 제12조제1항, 제14조제2항 신설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환경 위해 우려 제품의 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1

회용품 중 생태계·토양·수질·하수도 등 환경에 중대한 부담을 유발할 수 있는 제품을 환경 위해 우려 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 위해 우려 제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1. 재질·구조 개선에 관한 기준의 설정
2. 표시·광고 또는 사용상 주의사항에 관한 기준의 설정
3. 폐기물부담금의 부과
4. 그 밖에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자원순환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제1항에 따른 환경 위해 우려 제품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재료·용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재료·용기(제8조의3에 따라 환경 위해 우려 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조의3에 따른 환경 위해 우려 제품에 대하여 사용 후 처리 방법, 분리배출 여부 등 환경 위해 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표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8조의3(환경 위해 우려 제품의 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1회용품 중 생태계·토양·수질·하수도 등 환경에 중대한 부담을 유발할 수 있는 제품을 환경 위해 우려 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환경 위해 우려 제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u> <u>1. 재질·구조 개선에 관한 기준의 설정</u> <u>2. 표시·광고 또는 사용상 주의사항에 관한 기준의 설정</u> <u>3. 폐기물부담금의 부과</u> <u>4. 그 밖에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자원순환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u> <u>③ 제1항에 따른 환경 위해 우려 제품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12조(폐기물부담금) ① 기후에	제12조(폐기물부담금) ① -----

